
인증심사안내

1. 공장심사 참석자

- 인증심사원 : 한국공기청정협회 인증심사원
 - 인증업체(공장) 입회자 : 인증담당자, 품질관리담당자
-

2. 공장심사 진행(공장심사 33개 평가항목에 대해 심사)

- 입회자 상견례(인증심사원 - 업체담당자)
 - 인증 및 품질관리담당자 인터뷰 : 공장심사 평가항목에 따른 인터뷰 진행 / 인터뷰는 수시 진행
 - 서류원본대조 :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첨부 서류와 공장에 비치된 서류와의 원본대조
 - 서류심사 평가 : 신규는 최근 3개월 / 정기심사는 최근 1년간 기록으로 평가
 - ※ 첨부서류 : 인증신청서 내용에 따른 서류
 - ※ 추가서류요청 : 평가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현장에서 즉시 인증심사원이 요청 및 확인
 - 현장 평가 : 작업 표준 및 사내표준에 따라 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 / 자재 관리 등을 공장심사 평가 항목에 따라 확인 및 평가
 - 사진촬영 : 평가 시 필요에 따라 공장내부 및 관련서류 촬영
 - ※ 촬영 불가 시 인증심사원에게 사전 공지 바람, 사진은 인증업체에서 별도 촬영하여 제출
-

3. 공장심사 적합시

- 시험체 확인 : 인증 신청 시 제출한 모델명 및 첨부 사진과 일치여부 확인
 - 시험체 개수 확인 :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20대 이상 재고량 확인
 - 시험체 선정 : 인증심사원은 제조일 확인 후 준비된 시료 중 2대에 대해서 랜덤샘플링 실시
선정된 제품에는 시험체 봉인지 부착
 - 사진촬영 : 시험체의 적재사진 및 시험체에 대한 상세 사진 촬영, 제품 손상 염려로 인해 분해가 불가한 부분은 심사원이 업체에게 제출 요청.
 - ※ 촬영 불가 시 인증심사원에게 사전 공지 바람, 사진은 인증업체에서 별도 촬영하여 제출
-

3-1. 공장심사 보완/부적합시

- 부적합/보완 내용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고지
 - 보완 및 개선 요청
 - ※ 공장심사 보완시 보완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인증심사원 판단하에 **시험체선정** 진행 가능
 - ※ 공장심사 부적합시 시험체선정 진행 불가
-

4. 공장심사 생략(면제)인 경우 (업무규정 22조 참조)

- 공장심사가 면제인 경우 제조설비, 시험·검사, 설비, 품질관리담당자 지정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시료채취(시험체선정) 시 현장에서 이를 확인
 - 위 **3. 공장심사 적합시** 항목 시행
-

5. 결과 통보

- 공장심사 완료 후 최종 결과 통보
 - 공장심사보고서에 심사원 및 입회자 날인
 - ※ 공장심사 결과는 현장에서 즉시 통보
 - 공장심사 적합시 : 공장인증서 발급
 - 공장심사 보완/부적합시 : 보완/부적합 개선 조치 요청
-